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8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이기준 의원

찬 성 자 : 이묘배, 최선호, 최순희,
신재향, 정성훈, 성용근
의원(6명)

1.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발전사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주민의 참여 및 기준,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9조)

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민참여”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민”이란 법 제27조의2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주민 참여사업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육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공유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요구사항과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사업자의 협력) 발전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공유 및 지역상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의 환원 및 공공기여
2. 주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3.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및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에의 참여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주민의 참여 및 기준)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식, 채권, 펀드 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발전사업자는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참여 가중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제공대상, 기준·절차·방법 및 주민참여사업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범위 등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발전사업자는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또는 설비용량 3,000kW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 ①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개발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① 시장은 발전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 계획
5. 발전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발전사업자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 시행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거짓 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및 공공기여(협약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2. 개발이익 공유 발전사업의 지정·변경·취소·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하며,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는 투자한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서 3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3. 시 소재 기관, 단체 대표자 또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적절

2. 부적절

3. 보완요구(재심의)

⑤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구, 공사·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사전 연구, 검토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흑액	
	0.5	매립지가스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16.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¹⁾⁴⁾			
	500kW 이상 태양광 ²⁾		3,000kW 이상 육상풍력	3,000kW 이상 해상풍력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총사업비 ³⁾ 의 1% 이상 2%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75
총사업비 ³⁾ 의 2% 이상 3%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총사업비 ³⁾ 의 3% 이상 4% 미만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5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25
총사업비 ³⁾ 의 4% 이상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3

-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 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4) 제7조의2제4항 각호에 따른 인접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아래 수식에 따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차감하여 부여 (단, 태양광·육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인 경우로서 인접주민등에 해당하는 모두가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만큼 참여하여도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조를 받아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아래 수식에 따른 값과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값의 80% 중 큰 값을 부여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begin{aligned}
 & \text{주민참여형 추가가중치 최종값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절사)} \\
 & = \text{구간별 주민참여형 추가가중치} \times \frac{\text{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text{전체 주민참여금액}} \times \frac{1}{30} \times 100
 \end{aligned}$$

<별표 2의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발전원	발전사업 설비용량	지역의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육상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군·구
해상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읍·면·동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해상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시·군·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다.)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점이 속하는 시·군·구
송변전설비	-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통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2.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3. 15만 4천볼트 변전소 : 육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이내의 지역

<별표 2의3> 인접지역의 범위

발전원 (설비)	발전사업 설비용량	인접지역 범위
태양광	500kW 이상 100,000kW 미만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동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육상풍력	3,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해상풍력	3,000kW 이상 100,000kW 미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및 섬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법정동과 해당 법정리·법정동과 연결한 법정리·법정동 (해안선에 연결하지 않은 법정리·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2.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섬이 속하는 법정리·법정동 (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섬이 섬으로만 구성된 읍·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이 속하는 읍·면으로 한다)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법정동과 해당 법정리·법정동과 연결한 법정리·법정동 (해안선에 연결하지 않은 법정리·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